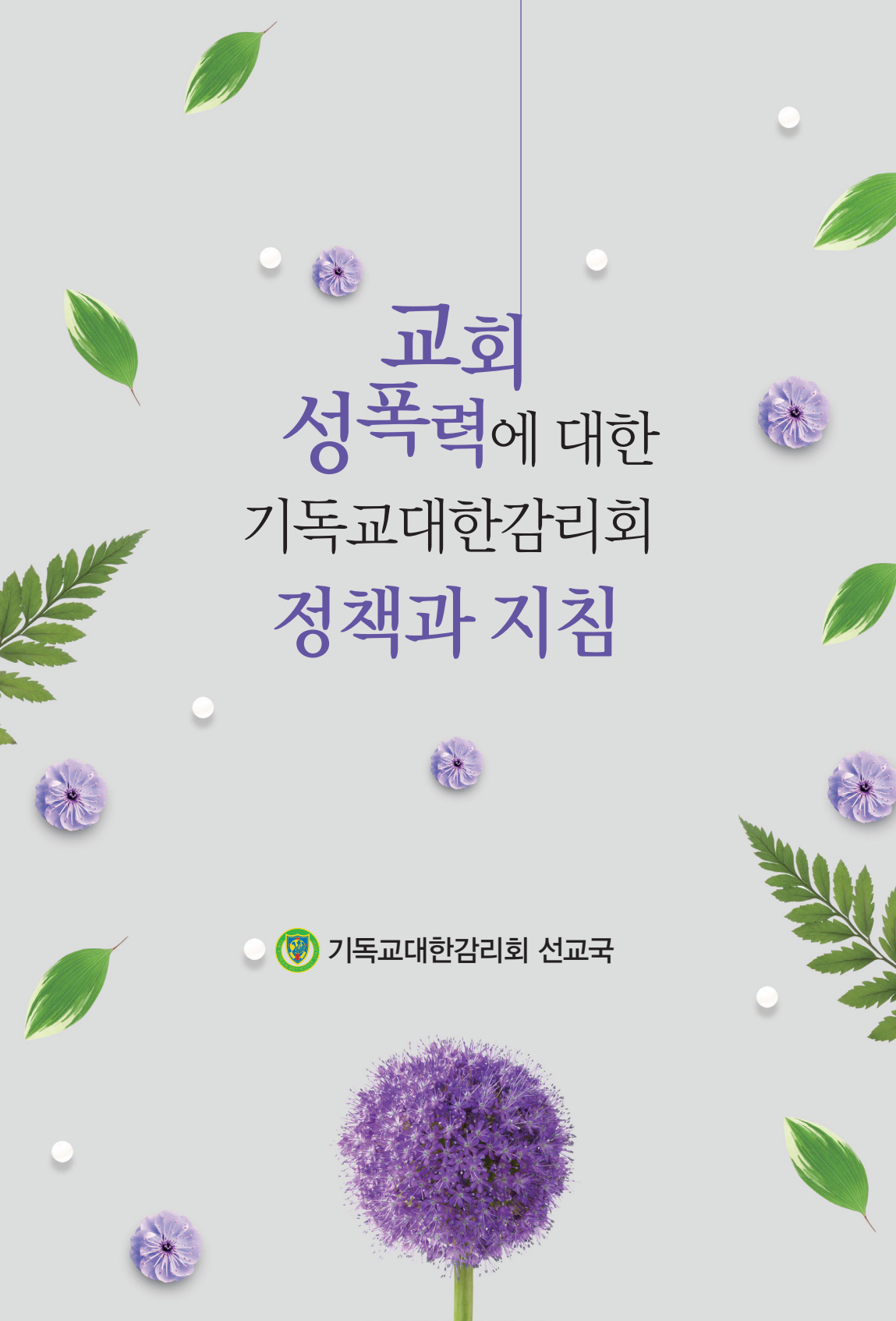




교회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

교회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서 문

그간 감리교회 안에서 여러 건의 목회자 성폭력이 일어났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가 크게 상처받고 실망했습니다. 교회가 성폭력에 안전하지도 않으며 그 처리과정이 공정하지도 않음을 여러 차례 경험한 것입니다. 이에 2018년 제33회 총회에서 여성총대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지침”(이하 ‘정책과 지침’)을 다음 총회까지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건의안이 통과됐고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연구소위원회에서 2년간 연구하여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과 지침을 통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가 보다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교회성폭력 피해자들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정책과 지침은 이미 교회성폭력에 대한 정책을 총회에서 채택하거나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범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교단들과,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국내 교단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해 낸 것입니다. 연구에 참조한 자료는 미연합감리회(UMC), 미장로교회(PCUSA), 캐나다연합교회(UCC), 미국성공회, 루터교세계연맹, 카톨릭뉴욕대교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정책과 지침, 법과 강령입니다.

특히 해외 교단들은 2, 30년 전부터 교회성폭력 정책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단이 엄청난 손해 배상을 하게 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된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선교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모쪼록 감리회 구성원들이 이 정책과 지침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며, 모든 교회와 단체에서 이를 교육하고, 웹사이트 게재를 포함하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폭력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정숙, 홍보연, 황창진

* 신학 감수를 맡아주신 이찬석 교수님, 법률 감수를 맡아주신 송인규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양성평등위원회 연구소위원회에도 감사합니다.

●● Contents



서문	06
----	----

01

목적	09
----	----

02

신학적 진술	10
--------	----

03

목회자 성윤리 강령	16
------------	----

04

정책	19
----	----

05

예방과 사후 관리	25
-----------	----

06

절차	34
----	----

07

용어정리	46
------	----

08

양식	56
----	----



목적

이 문서는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책과 지침입니다.¹⁾

감리회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장로 등 평신도 직분자와 교인, 교사와 청소년/청소년 지도자, 교회·본부·단체의 임원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은 이 정책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성적 비행과 성폭력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범죄입니다. 특히 목회적·신앙적·교육적 돌봄 관계에서 책임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성적 비행과 성폭력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오용하는 범죄입니다.

이 정책과 지침의 목적은 교회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를 분명히 하고, 모든 의혹을 올바르게 밝혀 정의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피해 생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정의를 이루고,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책과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감리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이 문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외 기독교회(교단)들의 자료 연구에 바탕한 것이다. 연구에 참조한 자료는 미연합감리회(UMC), 미연합장로교회(PCUSA), 캐나다연합교회(UCC), 미국성공회, 루터교세계연맹, 카톨릭뉴욕대교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정책과 지침, 법과 강령이다.

· 신학적 진술



성폭력과 선행은총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화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하는 죄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인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파괴하고 예수님의 정의를 왜곡하며 성령님의 돌보심을 무력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관계성과 온전성을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성폭력이라는 죄에 대해서 감리회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현존과 정의를 회복시켜야

하는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총을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감리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111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에서 신앙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과 죄의 상관관계에 설명하며 우리가 보편적 은총을 잘 분별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양심의 빛에 상반되는 행동을 할 때에

다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은총이 없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²

이를 비추어볼 때 성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여 일어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신앙인은 자신이 받은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거부하고 은혜에 힘입어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악용하여 다른 이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경계선을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하면 우리 모두는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따라서

선행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폭력의 죄를 범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건강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회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43번 “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에서 회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깨달음이며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죄를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생활에 남아 있는 죄,
곧 우리의 말과 행위에 아직도 고착되어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며...
지금 우리의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³

성폭력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과 연결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 회복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세월 성폭력에 대한 신학적 통찰과 윤리적 논의에 열심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방임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침범 당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이웃이며 지체입니다. 교회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공동체의 성윤리를 바로 잡지 못한 점을 회개하고, 교회 내 성폭력 범 죄를 근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켜 교회가 거룩한 성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력과 칭의, 그리고 신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신생’이라고 합니다. 신생이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타락한 본성과 행위를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45번 “신생”(The New Birth)에서 신앙인이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신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영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
여기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⁴

공동체의 회복과 성화

진정한 감리교회는 성폭력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정의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리교회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성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화란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성화란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주와 교제하는 실존으로 회복하는 것이며, 인간이 창조될 때처럼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존 웨슬리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성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잠자는 게으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열심을 내어 온전한 순종에 거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깨어 아픔을 지닌 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게 될 때
온전한 성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⁵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새번역)”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리교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악에 저항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성화된 감리교인, 성화된 감리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감리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감리교인으로서 개인 구원과 사회 성화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완전, 성결한 감리교회를 향해

이제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를 이루어가는 감리교인,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성결의 다른 표현이며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⁶ 완전의 과정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든 다시 죄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⁷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성폭력이라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임하는 공동체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성과 연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성화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공

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가진 교회 지도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성폭력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선교 안에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인도함에 있어서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며 지킬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 | 존 웨슬리, 조종남 · 김흥기 · 임승안 외 옮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웨슬리 설교전집 6』(대한기독교서회, 2006), 175-176.

3 | 존 웨슬리, 조종남 · 김흥기 · 임승안 외 옮김, "성경적 구원의 길," 『웨슬리 설교전집 3』(대한기독교서회, 2006), 156-157.

4 | 존 웨슬리, 조종남 · 김흥기 · 임승안 외 옮김, "신생," 『웨슬리 설교전집 3』(대한기독교서회, 2006), 194.

5 | 케네스 콜린스, 이세형 옮김, 『존 웨슬리의 신학』(KMC, 2012), 395.

6 | 존 웨슬리, 조종남 · 김흥기 · 임승안 외 옮김,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 설교전집 3』(대한기독교서회, 2006), 87.

7 | 『교리와 장정』(기독교대한감리회, 2017년), 46.

· 목회자 성윤리 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회자에게 올바른 성윤리와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 추구)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평등하고 존귀함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목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는다.
3. 우리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거나 차별에 근거하여 고용·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제3조(성폭력 근절)

4. 우리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수)을 명백히 반대한다.
5. 우리는 교회성폭력이 범죄임을 선언하고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해 힘쓴다.
6. 우리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노력하며,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한다.
8. 우리는 사이버 성폭력(SNS 채팅방 성희롱, 불법 촬영물 소비·유포, 국내외 아동·청소년/청소년 포르노 사이트 가입 등)을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부부강간(합의되지 않은 부부간의 성관계)을 하지 않는다.
10. 우리는 스토킹, 성매매를 하지 않으며 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11. 우리는 아동·청소년/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성폭력을 인지했을 때 이를 반드시 신고한다.

제4조(목회자의 경계)

12.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지켜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데이트 등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13. 우리는 대화나 설교 등에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며, 외모에 대한 표현이나 평가는 칭찬으로 사용했는지라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14. 우리는 목회자로서의 힘과 권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이를 남용하는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제5조(목회자의 경건)

15. 우리는 스스로 자기 돌봄과 경건을 실천할 의무를 지닌다.
16. 우리는 스스로가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와 성찰 등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17. 우리는 자기 돌봄을 위해 정기적으로 영적·정서적·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멘토링, 영적 지도, 목회상담 등)를 만든다.
18. 우리는 영·혼·육의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19. 우리는 신학과 설교를 이용하여 성폭력과 성적 비행을 정당화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20.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 계발을 위해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21. 우리는 목회자 성윤리 강령을 정기적으로 성찰하며 건강한 성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한 목회 활동을 위해 힘쓴다.



정책

신고와 의무

감리회는 성폭력과 성적 비행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거짓 혹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과 성적 비행을 인지한 목회자는 이를 해당 의회와 의회의 장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인지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⁹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신고의무자인 경우¹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밀과 존엄성 보장

성적 비행과 성폭력 혐의를 다룰 때, 책임자는 관련자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때의 관련자는 피해자와 신고인, 성폭력 가해혐의로 지목받은 자(이하 가해지목인¹¹), 각자의 가족 등이며, 해당 정보가 부적절하게 폭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사와 전문성

책임자는 사건이 신고·제보되는 즉시 피해자와 사건 보고자, 가해지목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때 훈련된 전문가들이 고도의 목회적 돌봄과 관심으로 조사

와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을 하는 사람이나 위원회 위원은 피해자 혹은 가해지목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책임자와 자원봉사자는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과정·자격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심사위·재판위) 위원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감리회에서 정한 소정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 성폭력은 종종 위력·위계¹²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피해생존자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계¹³ 지키기와 목회적 돌봄 관계에서의 책임

목회자, 교사는 교인, 학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¹⁴ 목회자와 교인, 교사와 학생 등 목회적 돌봄 관계¹⁵에서 발생하는 교회성폭력과 성적 비행의 모든 책임은 권위를 위임받은 목회자, 교사에게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경계선을 넘은 이들에게 감리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목회적 돌봄 관계에 있는 목회자¹⁶와 교인의 데이트

목회적 돌봄 관계에 있는 목회자와 교인의 데이트·성적 행위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그 교회 교인 사이의 데이트·성적 행위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되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평등한 관계에서의 쌍방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혼의 목회자가 목회적 돌봄 관계에 있는 성인 교인과 데이트 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한다면, 임지를 옮겨 목회자와 같은 교회 교인 간의 데이트를 방지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 서약서

목회자와 교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폭력 인지 교육, 건강한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개정된 규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연장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리회 목회자는 준회원 진급과정, 정회원·장로 연수과정에서 이뤄지는 교회성폭력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개체 교회와 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신학기관은 목회자가 갖는 권위에 대한 성찰과 경계 지키기, 성희롱예방, 데이트 폭력 등을 포함한 목회자 성윤리와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성폭력에 대한 감리회 정책과 지침 등을 교과과정 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감리교회와 단체, 신학(대학)교는 목회자의 청빙과 임명, 직원의 고용과 교수의 임용 시 교회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감리회의 정책과 지침을 인지했으며 이를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서류 형식은 Ⅷ.양식 2. 서약서 참조)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과 접촉해야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등은 모두 성적 비행과 교회성폭력, 권력 남용과 어린이 성학대 예방에 대한 감리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한 이는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미성년자들과 접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만나야 하는 이들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¹⁷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라,¹⁸ 확정된 성범죄자(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 모두)는 형 종료 후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성학대와 예방에 대한 교육과 자료는 교회학교와 기타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양육자에게도 제 공돼야 합니다. 보호자/양육자가 어린이 성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 우, 감리회는 보호자/양육자가 자녀에게 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 공해야 합니다.

목회자 자격심사와 연회 보고, 감리사 · 감독 · 감독회장 후보 등록 시

진급 중인 목회자의 자격심사, 연회 정회원 목사들의 품행통과에서 목회자 성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목회보고서에는 성폭 력 예방교육 참여 여부, 성범죄 관련 가해 혐의 여부가 함께 보고돼야 합니다. 또한 감리사 · 감독 ·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 범죄 경력과 성범죄 경력 조 회 회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자의 자격을 엄격히 심 사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아동 · 청소년/청소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 는 가중처벌합니다.
- 어린이 성학대 행위,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감리회의 목회자나 임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없으며, 기관의 사역이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어린이 성학대 행위, 성추행,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유죄가 인정된 목회자는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영 구히 교회의 목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면직 혹은 출교시켜야 합니다.
- 성적 비행(성매수, 불륜 등)을 저지른 목회자나 임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 면직, 출교, 해직 등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정직, 면직의 경우, 가해자를 위한 교육을 함께 명령하여, 성적 비행이 잘못 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가해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견책, 근신, 정 직, 면직 등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 를 통해 성희롱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합니다.
- 고의로 어린이 성학대나 성적 비행, 성폭력에 대해 거짓 혐의를 씌운 사람은 감리회 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사회법에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성적, 직업적 경계가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노골적인 성적 농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복제, 촬영물에 대한 비동의 유포,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메시지 등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온라인 사용과 범죄로 인해 소중한 목회 사역에서 떠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감리회 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 8 | 당회와 구역회는 담임목사와 감리사, 연회는 연회의 장인 감독, 총회는 총회의 장인 감독회장인 여기에 해당됩니다.
- 9 |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미국, 캐나다 등은 신고 의무자에 종교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단들의 경우, 목회자를 역시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 1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 등에 의거,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와 종사자-교직원, 각종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의사 및 의료인, 간호사, 학원 강사, 소방 및 급급대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11 |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폭력 범죄가 확인되었을 때는 피해자/피해생존자와 가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2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가지는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력'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13 | 경계(boundary)란 나를 지키고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백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의존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인의 과도한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 또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경계(감정, 관계, 생각, 시간 등)가 보호돼야 하는 만큼, 교인의 경계 역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면서 동시에 '한계'이며,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에서는 경계 지키기의 책임을 목회자에게 두게 됩니다.
- 14 | 적절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 신체적 접촉, 이성과의 1:1 심방, 과도한 심리적 의존 등을 금해야 합니다. 병행심방 등 부득이하게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도 환자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며, 가능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을 심방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이들이 동행해야 하며, "야밤"라고 부르며 하는 등 과도한 심리적 의존을 조장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15 | 1:1 양육이나 심방, 멘토링 등도 포함합니다.
- 16 | 목회자에는 사역자(전도사, 신학생), 교역자(목사, 진급 중인 전도사)가 포함됩니다.
- 17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법규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사후 관리

예방과 사후 관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감리회의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예방

1) 교회성폭력특별법 제정 제안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단체, 기관과 감리회에 소속된 사람과 연관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처리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교회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교리와 장정에는 성폭력 관련 법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처벌되지 않는 등 여러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과의 종류, 재판 과정, 징계 수위, 피해자 보호 등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특별법에는 다음 각 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교회성폭력의 정의(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 ② 피해자의 비밀 보장과 돌봄, 치유에 관한 규정
- ③ 성폭력 발생 시 조사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④ 성폭력 발생 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
- ⑤ 목회자 진급 및 연수 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관한 규정
- ⑥ 사회적 약자(어린이, 청소년/청소녀,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가해한 이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 ⑦ 성폭력 사건 고소·고발에서 기탁금 면제에 관한 규정
- ⑧ 목회자 청빙 시 성폭력 범죄의 가해 유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증명할 것에 대한 규칙
- 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관한 규정
- ⑩ 가해자의 징계와 회복에 관한 규정
- ⑪ 기금과 경비에 관한 규정
- ⑫ 목회자의 심방, 상담, 교육 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 규칙

2)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감리회성폭력예방지침서 활용

- (1) 감리회는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②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 조치
 - ④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⑤ 성도 간의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⑥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3) 본 정책의 〈Ⅳ 정책, 의무교육과 서약서〉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추가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 ① 준회원 진급과정 중인 목회자

- ② 정회원 연수과정 중인 목회자
- ③ 연수과정 중인 장로
- ④ 각 교회와 단체, 신학(대학)교에서 청빙 예정인 목회자
- ⑤ 각 교회와 단체, 신학(대학)교에서 고용 예정인 직원
- ⑥ 각 교회와 단체, 신학(대학)교에서 임용 예정인 교수

* 위 각 호 중 ④, ⑤, ⑥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회의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 양식은 Ⅷ.양식 2. 서약서 참조)

- (4)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기관 및 단체들은 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발행한 『감리회성폭력예방지침서』를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감리회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직분자, 교사와 청소년/청소녀 지도자, 교회·본부·단체의 임원과 직원, 자원봉사자는 내용을 필수로 숙지해야 합니다.

* 이 지침서는 아래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접속 후 첨부파일 내려받기)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resources-of-kmc?pageid=2&mod=document&uid=72144>

- (5)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폭력예방강사/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자격증’을 수여받은 자
 - ②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발급한 ‘감리회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자격증’을 수여받은 자
 - ③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위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자

3)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감리회는 목회자 성범죄를 포함, 감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성폭력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성폭력상담센

터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②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 ③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제안 사항
- ⑤ 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기타 성폭력 예방 업무
- ⑦ 성폭력 신고 절차와 처리 절차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⑧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⑨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고 상담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2)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등은 감리회 홈페이지 성폭력상담센터에 게시된 ‘성폭력상담센터신고서’¹⁹를 이메일²⁰로 제출하거나, 02-399-2036(가능 시간 월·수 오후 2-5시, 금·토 전 11-오후 1시, 추후 변경가능)으로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 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③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 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 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⑦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사후 관리와 징계

감리회는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과 완료되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교회의 삶과 사역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1)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 (1)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지목인과의 공간 · 업무 분리 등 적절한 신변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 각 교회와 단체의 장(인사 ·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감독회장, 감독 및 감리사로 부터 위임받은 자)은 피해자, 신고인, 대리인, 조력인에 대하여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②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

③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④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3) 각 교회와 단체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감독회장, 감독 및 감리사로 부터 위임받은 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지목인의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4) 각 교회 및 단체의 장, 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2) 피해자 치유 및 지원

각 교회와 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실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치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속한 교회 및 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폭언과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및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의 행위를 비롯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속한 교회 및 단체는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교회 및 단체는 피해자를 만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감정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4) 피해자가 속한 교회 및 단체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모임 및 예배를 가져야 합니다.
- (5) 피해자가 재판을 시작할 때에는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기탁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 (6)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가 인준한 상담소에 상담을 연계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3) 공동체의 치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각 교회와 단체는 그 공동체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1) 각 교회와 단체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되도록 소그룹, 부서별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 (2)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교회와 단체는 구성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2차 가해를 최소화합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 (3)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교회와 단체에서는 갈등 해결과 평화적 소통을 위한 훈련,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문 심리치료/상담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구성원 전체를 비롯하여 부서별, 소그룹별 상담도 충분한 공동체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 (3) 성폭력 피해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피해자를 위한 예배문을 만들거나 기존의 예배문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4)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각 교회 및 단체는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모든 사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와 재판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목회자는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되, 가해 정도에 따라 영구히 교회의 목회에서 제외하고 면직해야 합니다.

(1) 징계 절차(절차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①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사건 처리의 과정이 완료된 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교리와 장정』과 (제안된)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②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③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 관련자를 엄중 징계합니다.
- ④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조사 중인 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사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가해자 교육 :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받는 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 ① 성희롱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 20시간의 교육 이수
- ② 성추행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 40시간의 교육 이수
- ③ 성폭행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 80시간의 교육 이수
- ④ 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후라도 상담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⑤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상담사는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가 인준한 상담소의 상담사로 합니다.
- ⑥ 위 교육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교육받는 이가 부담합니다.

5) 재발 방지

- (1)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 (2)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성폭력 사건 가해지목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4)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이 종결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19 | <https://kmc.or.kr/sexual-violence>.

20 | kmchotline@naver.com.

절차



1. 현재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한 성폭력 처리 과정

교회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습니다.²¹ 신고와 제보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례가 접수되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절차를 논의합니다. 이때 사례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는 법적인 지원(사회법 또는 교회법의 고소 고발), 심리 의료적인 지원(직접 상담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을 합니다.

◆ 감리회 안에서 성폭력 가해자 징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일반 법정(사회법)에서 교역자가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 ⇨ 감리회 해당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해야 합니다.²² 판결문 첨부하여 해당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범과 ⑬항²³에 의해 고소·고발 ⇨ ① 가해지목인에게 권면서 발송²⁴ ② 해당 의회 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 - 권면서, 고소·고발장과 범행 설명서²⁵ 제출, 기탁금 납부²⁶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리와 장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에서 범과에 대한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이며, 성폭력 가해의 경우에는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합니다.²⁷

◆ 현재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교회성폭력을 범과로 명시하지 않고, 피해자

들이 고소할 때 기탁금(연회 500만 원, 총회 700만 원 등)을 납부토록 하며, 공소시효가 사회법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점 등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 교단들은 성폭력 근절과 징계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교단들 역시 교회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법(특레법)”을 연구하고 있거나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2.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

감리회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본부 특별위원회로 통과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성폭력 사건의 고충 처리, 심의, 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

- 1) 양성평등위원장과 성폭력 상담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되
한 성이 6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2) 위원은 성폭력 문제의 깊은 이해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
어야 하고 최근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합니다.
- 4)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회 내 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와 고소를 대행하는 일
 - ② 교회 내 성윤리 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 조사, 심의하는 일
 - ③ 교회 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
 - ④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책임적으로 연계
하는 일
 - 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일
 - ⑥ 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일

3. 처리 절차(개체 교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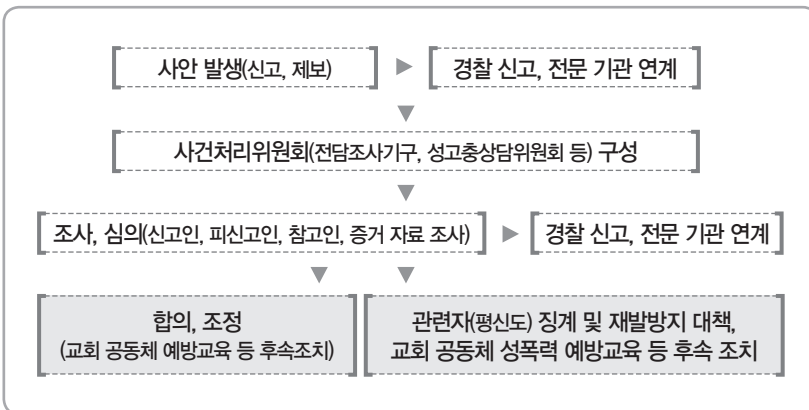
개체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체는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를 구성(이하 사건처리위원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건처리위원회는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척사유를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이 때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 사건처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3) 사건처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안을 조사, 심의하여 합의, 조정할지 징계할지 결정합니다. 조사, 심의하는 동안 가해지목인의 교회 내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합니다.
- 4) 가해지목인이 목회자인 경우 성폭력상담센터에 신고합니다.
- 5) 『교리와 장정』 재판법 7조에 근거하여 가해지목인이 속한 해당 의회 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합니다.
 - 교회 임원과 교인은 구역회 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
 - 장로와 서리 전도사 및 전도사는 지방회 심사위원회에 고소, 고발
 - 연회 회원인 교역자와 장로는 본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고소, 고발

◆ 사건 처리 흐름도

상담 단계 - 조사 단계 - 심의 단계 - 징계 및 후속 조치 단계



4. 성폭력 대처 매뉴얼²⁸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1) 목양적 지원

-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 교인들로 하여금 평소에 성폭력 상담소나 관련 기관에서 훈련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성폭력 관련 상담소나 기관들과 정보를 나누고,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 목회자는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지켜 줄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더 이상의 폭행이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여성 피해자는 남성 목회자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목회자나 평신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 목회자가 여성 피해자를 돕는 경우 안심시키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의의 행동일지라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도움을 주는 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다른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적 지원

-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는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성병이나 성기 주변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 성

폭력 전문 병원에 다녀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중요한 증거 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의 경우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 있는 시간이 72시간입니다. 그 외의 다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거나 아물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야 합니다.

-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대 몸을 씻지 마십시오. 샤워 등으로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은 옷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문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합니다. 우선 몸에 난 상처를 살펴 봅니다. 손톱 밑을 검사하여 혹시 가해자의 혈액이나 이물질 등을 확인합니다. 외성기와 내성기를 검진합니다. 증거 확보나 진료를 위한 것입니다. 또 혈액 채취를 합니다. 소변 검사와 임신 여부 검사도 합니다.

증거 채취와 검진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법률적 지원

-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 성폭력은 과거 친고죄였으나 2013년도에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 고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는

강제 추행과 강간의 경우 10년이며, 강간 치상은 15년입니다. 또는 장애인 혹은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 시효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DNA증거 등의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 수사절차에서 |

성폭력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조사받을 때 신뢰 관계의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조사 내용을 비디오 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검사로부터 기소를 했는지 통지받을 권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사실과 이유서’를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재판 전에 증거 보전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 공판절차에서 |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 가해자에게 법정에서 퇴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권리, 비공개 재판 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을 방청시킬 권리 혹은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의 권리, 비디오를 통해 증인 신문을 받을 권리, 증인 신문 과정을 촬영할 권리,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권리 등이 있으며, 이 외에 법정 외에서 신문을 받을 권리,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권리,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 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재판의 결과를 알 권리 등이 있습니다.

-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드립니다.

• 항고와 항소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① 피해자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 ② 피해자의 커다란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피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하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 ④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을 검토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이나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성규범(순결 이데올로기, 성 이중규범)이나 편파적인 종교적 신념(가령,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낙태/임신 중지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을 딛고 살아온 용기 있는 태도를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가 가진 장점을 격려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 ⑥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 ⑦ 피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상황을 하

나씩 검토하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성을 예측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⑧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 주십시오.
- ⑨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저항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⑩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⑪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⑫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 ⑬ 피해자는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새롭게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⑭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 ⑮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 ⑯ 피해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관계나 자아 개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5) 피해자 지원 매뉴얼

- ① 우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 기독교여성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과 연계하시면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치유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잠리회성폭력에 방지침서』 76쪽 이하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참조)

- ② 친구나 친지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 ③ 증거를 보존해 둡니다.
- ④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⑤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거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는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치리 기관에 알립니다.(기획위원회 등)
 - 개체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연회 등 상위 치리 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사회법에 고소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감독이 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 ⑥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성희롱 가해자 관련 매뉴얼

(1) 개인적 성찰의 차원

- 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한 판단은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선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사건 해결에 중심이 돼야 합니다.
- ② 사과의 방식 : 빠른 사과로 일단락 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자숙과 반성

의 시간 후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 행위를 언급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한 번의 사과로 피해자가 마음이 풀리고 용서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들은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식으로 사과합니다.
- ④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⑤ 자신의 여성관이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책임져야 할 것들

- ① 법적(형법·민법, 교회법)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집니다.
- ② 가해자 교육에 참여합니다.
- ③ 피해자와 교회 공동체에 사과합니다.
- ④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라도 피해자의 심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합니다.
- ⑤ 가족과 주변인의 비난이나 낙인도 감수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⑥ 주변인에게 자신이 무고하다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의 탄원서를 써달라고 조름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고 비난을 돌리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가해자 주변인 관련 매뉴얼

(1)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

• 가해자에게

- ① 가해 행위를 옹호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 ②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③ 가해자의 말·행동이 왜 성폭력인지 알려 줍니다.

예) “상대에게서 분명한 동의를 받았니?”

④ 성폭력의 성립 유무는 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받은 느낌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⑤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알려 줍니다.

⑥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합당한 징계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돕습니다.

⑦ 내가 사과했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님을 알려 줍니다.

⑧ 이 사건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주변인에게(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② 피해 사실을 확산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적 친분에 기인한 판단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④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이나 공개 수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 피해자에게

① 선부르게 중재하거나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을 캐묻지 않습니다.

③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 “교회에 덕이 안 되니 조용히 넘어가자”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언제까지 분노를 품을 거야? 분노를 품는 건 죄야.” “네가 그럴 만한 여지를 줬네.” 등

(2) 가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 ① 가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인지시키고 경고합니다.
- ② 가해 상황에 대한 녹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 ③ 성적인 농담에 웃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하고, 피해자가 공론화를 결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 내에 공식적 기구 개설이나 교육 등을 건의합니다.

21 | 신고 전화 : 02-399-2036(상담 시간 월·수 오후 2-5시, 금 오전 11-오후 1시, 추후 변경가능); 신고 이메일 : kmchotline@naver.com(본부 홈페이지 하단 '성폭력상담신고', <https://kmc.or.kr/sexual-violence>).

22 |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23 | 「교리와 장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 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24 | 이때 권면서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하며, 내용증명 접수 인지, 배달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5 | 「교리와 장정」 [1310] 제10조(고소·고발장과 범행 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및 범행 상황을 기록하고 범행 설명서에는 범행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6 | 「교리와 장정」 [1309] 제9조(고소·고발)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27 | 「교리와 장정」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28 | 이 부분은 「감리회성폭력예방지침서」(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2018)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56~85쪽)에서 사건 발생 후 대처 과정에 대한 부분만 발췌했다. 이 지침서는 본부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감리회 자료 190번에서 pdf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 용어정리



성폭력²⁹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 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폭행³⁰

상대와 동의 없이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강제로 성기 삽입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유형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 간음, 강간미수 등이 포함됩니다.

성추행³¹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강제추행)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폭행 협박이 없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³²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기타 성적 봉사 요구 등을 포함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 불법 촬영은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1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차별³³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관행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차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부장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즉 사적, 공적인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체계적,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성차별은 제도화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종차별과 비슷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³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사랑,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성행동 등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를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동의³⁵

동등한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시에 같은 것을 원하고 제안하며 수락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그 순간의 의견일 뿐이고, 그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비동의 간음죄³⁶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이라고도 합니다. 현행 형법 297조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법규가 위계(僞計) 및 위력(威力)으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초부터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노 민스 노)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교회성폭력³⁷

교회나 기독교 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교인이나 고용된 목회자(부담임목사, 전도사 등)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 범주에 넣어 징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³⁸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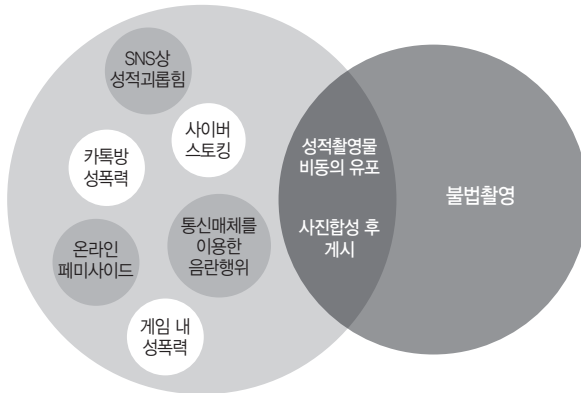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 불법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³⁹

인터넷, 모바일, SNS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입니다.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촬영된 이미지를 조작·유포·유포협박 하는 등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괴롭힘을 말합니다.

[그림 1] 사이버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비교⁴⁰



스토킹⁴¹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동통신·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은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키(stalker)라고 부릅니다.

성매매⁴²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후 ‘성매매’는 기존의 ‘윤락’을 대체하는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입니다. 이전에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倫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는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입니다.

가정 폭력⁴³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이나 학대, 부부간 폭력이나 학대, 형제간 폭력이나 학대 등입니다. 과거에는 가정 폭력이 각 가정의 문제라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가정 폭력을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child abuse), 노부모와 같은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는 노인학대(elderly abuse)로 규정하여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⁴⁴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입니다. 성적인 폭력뿐 아니라 과한 통제 · 감시 · 폭언 · 협박 · 폭행 · 상해 · 갈취 · 감금 · 납치 · 살인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가스라이팅⁴⁵

상황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대체어는 ‘심리 지배’입니다. 넓게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 전반을 일컫습니다.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빈 스톤(Robin Stern)은 저서 『가스등 이펙트』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그를 이상화하고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가스등 이펙트’(Gaslight Effect)라 설명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거짓말, 사실에 대한 부정, 모순된 표현,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이런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을 겪은 피해자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고립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인지 경험까지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⁴⁶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목회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습니다.

성인지 감수성⁴⁷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양성평등)⁴⁸

‘양성평등’은 단순히 남녀 성별 간의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배제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예수께서는 모든 생명을 ‘평등’과 ‘존엄’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 내는 것이 교회의 양성평등입니다.

현 시대에서 양성평등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집단이 현재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평등은 양적인 면에서의 평등과 질적인 면에서의 평등이 모두 이루어질 때 진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회들을 적극 이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역자⁴⁹

사역자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을 심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된 이로서,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합니다.

교역자⁵⁰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이로서,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합니다.

신학생

신학교에서 신학, 기독교교육, 종교철학 등 신학 분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를 말합니다.

평신도 임원⁵¹

평신도 임원은 개체 교회에서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합니다.

교인⁵²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로서,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합니다.

교사

교회학교에서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부서에서 소속된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이를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청소년

영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0세~만19세의 나이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청소년을 말합니다.

교회본부 단체 임원 직원

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단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평신도 및 목회자를 말합니다.

피해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말합니다.

신고인

교회성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지목인

성폭력을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⁵³

성폭력은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 고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수사 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강제추행과 강간의 경우 10년이며, 강간치상의 경우는 15년입니다.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재판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고소장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행 후 5년 이내에 고소,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법에 준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 29 |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2018), 38.
- 30 |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39.
- 31 |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39.
- 32 |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39.
- 33 | [네이버 지식백과] 성차별 [sex discrimination]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 34 | 이나영,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서울: 프로젝트P, 2020), 203.
- 35 | 달개비 · 도미 · 로미 · 밍기뉴 · 시원 · 은사자,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서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2019), 13.
- 36 | [네이버 지식백과] 비동의 간음죄 (사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37 |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44.
- 38 |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성범죄 (사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39 |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사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40 | 출처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41 | [네이버 지식백과] 스토킹 [Stalking]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역중,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 42 | [네이버 지식백과] 성매매 [Prostitution, 性賣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43 |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家庭暴力]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웅).
- 44 |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트 폭력 (사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45 | [다음백과] 가스라이팅 gaslighting.
- 46 | [네이버 지식백과] 그루밍 성범죄 (사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47 | [네이버 지식백과] 성인자 감수성 (사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48 |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 49 | 〈교리와 장정(2019)〉 제2편 헌법, 제2장 회원 제3절 사역자.
- 50 | 〈교리와 장정(2019)〉 제2편 헌법, 제2장 회원 제4절 교역자.
- 51 | 〈교리와 장정(2019)〉 제2편 헌법, 제2장 회원 제2절 평신도 임원.
- 52 | 〈교리와 장정(2019)〉 제2편 헌법, 제2장 회원 제1절 교인.
- 53 |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식



1-1. 사역자/교역자/직원 _ 청빙(고용)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이름 :	성별 :	연락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이전 이력 내용 1		
주 소		
책임자(담임목사/기관장)		
직위/담당 업무		
근무기간		
이직 사유		
이전 이력 내용 2		
주 소		
책임자(담임목사/기관장)		
직위/담당 업무		
근무기간		
이직 사유		
이전 이력 내용 3		
주 소		
책임자(담임목사/기관장)		
직위/담당 업무		
근무기간		
이직 사유		
1) 본인은 성폭력 가해 행위로 인한 교회의 민원, 민사 및 형사 소송(진행)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성폭력 가해 행위자로 지목된 사유로 사임하거나 직위에서 해임된 적인 없음을 증명합니다. 3) 성폭력 가해 행위의 범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을 따릅니다. * 위의 질문지에 본인이 작성한 정보는 거짓이 없는 정확한 정보임을 확실합니다. 본인은 청빙/고용 책임자(담임목사/기관장)가 본인에 관한 이전 이력 내용을 확인하고, 감리회 법과 사법 절차에 관해 문의하도록 허용합니다. 본인은 청빙/고용 책임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전 교회/직장의 책임자가 사법당국에게 제출한 정보를 고용주체에게 공개하도록 승인합니다. 본인의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읽었으며, 작성된 정보를 토대로 청빙/고용 책임자가 청빙/고용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또한 정보의 합법적인 배포 또는 사용에 대한 모든 청구, 책임 및 소송 원인으로부터 청빙/고용 책임자는 관련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인)		

1-2. 청빙위원회 _ 청빙(고용) 절차에 필요한 서류

다른 교회나 기관에서 본교회(기관)에서 사역했던 자를 청빙하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 :	이메일 :
소속연회/지방회/교회 :	
성별 :	연락처 :
주소 :	
재직 확인	
청빙/고용된 이	
주 소	
직위/담당 업무	
근무 기간	
이직 사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처리 결과	
위의 질문지에 본인이 작성한 정보는 거짓이 없는 정확한 정보임을 확증합니다. 년 월 일 서명(인)	

2. 서약서 - 교회 ☐ · 단체 ☐ · 기관 ☐ · 신학(대학)교 ☐ · 기타 ☐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이 름 :

주 소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감리회 _____에 소속돼 근무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감리회 _____의 _____으로서 교회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인)

피해자	이름 : 성별 :	연락처 : 나 이 :
신고인과의 관계	본인 ☐ 목격자 ☐ 지인 ☐ 기타 ()	
가해지목인	이름 : 소속 : 연회 지방 교회 (기타 :)	
가해지목인이 저지른 범죄 (중복체크 가능) ☐ 아동 학대 ☐ 성적 모욕, 비난 ☐ 성적 의심(의처증, 의부증) ☐ 성희롱 ☐ 가정 폭력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 성관계 강요 ☐ 2차 가해 ☐ 성매매 알선 및 착취 ☐ 미성년자/장애인 등의 강간 및 강제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위계 혹은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 불법 촬영 or 유포 ☐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 유포 협박 ☐ 변태적 성행위 ☐ 온라인 그루밍 ☐ 합성 및 편집 후 유포 ☐ 기타		
위의 폭력의 형태 중 심각하다고 느끼는 순서대로 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까? ☐ ()		
원하는 사항	☐ 정보 ☐ 법적 처벌 ☐ 심리적·정신적 지원 ☐ 공론화 ☐ 사과 ☐ 기타 ()	
의심되는 성폭력에 대한 신고 사건 내용 • 누 가 : 가해지목인, 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연 제 : • 어디서 : • 무엇을 : • 어떻게 : • 사건의 영향력 :		
(1)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2) 가능한 경우 증거물 확보 및 첨부하세요. * 신고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제보의 내용을 거짓 혹은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신고인 서명(인) : _____ / 서명한 날짜 : _____		

4. 청빙/고용될 이에게 물어볼 질문

청빙/고용 책임자는 <청빙/고용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청빙/고용될 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 1) 귀하는 성폭력 가해 행위와 관련된 교회의 민원, 형사 혹은 민사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연루된 적이 있다면 사건 진행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2) 귀하는 성폭력 혐의에 관한 사유로 직책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같은 혐의로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와 같은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3) (2)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 이 혐의와 관련된 사건 개요를 제출하십시오. - 사건 발생 날짜, 빈도수, 행위 유형, 장소, 당시 사건 처리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등
- 4) 귀하는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사유로 전문적인 치료(신체적 혹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이에 해당한다면 치료자 및 전문가의 검인(사인)과 자격번호가 기재된 진단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5. 청빙/고용 책임자가 청빙/고용될 이를 청빙/임명/고용 시 교회/기관/지방 회/연회 등에 제출해야 할 서류

확 인 서

청빙/고용될 이 :

청빙/고용할 곳 :

본인은 위의 사람을 청빙/고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며,
_____에 이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이전 사역(고용) 기록을 통해, 청빙/고용될 이가 성폭력 가해 행위로 인한 교회의 민원, 민사 및 형사 소송(진행)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본인은 청빙/고용될 이가 성폭력 가해 행위자로 지목되어 사임하거나 직위에서 해임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본인은 청빙/고용될 이가 교회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4. 본인은 청빙/고용될 이가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확인했습니다.
5. 본인은 청빙/고용될 이가 재직하는 동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인)

교회성폭력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책과 지침

발행일 | 2020년 10월 27일

발행인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편집인 | 오일영 선교국 총무

연 구 |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기 획 |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디자인 · 인쇄 | 디자인통 (02-2278-7764)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동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홈페이지 | www.kmc.or.kr

